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7337 손해배상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가. 원고들은 연예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위 C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D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성형외과·피부과'의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 한다)를 만들고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블로그 카테고리 중 'style매거진', '국내외star', '오늘의hot이슈'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인 D은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로그를 관리, 운영하면서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의 직원이었던 D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성명 및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나. 판 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릇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 하는바, 이는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면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합중국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가 1953년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한 이래 상당수의 미합중국 주법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기에 이르렀고, 논란은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살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우리 법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람의 성명, 초상 등은 한 개인 인격의 상징이므로 당해 개인은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성명, 초상 등을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명, 초상 등은 상품의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흡인력을 가질 수가 있고, 이처럼 고객흡인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인격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성명, 초상 등에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사람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성명, 초상 등이 시사보도, 논설, 창작물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은 정당한 표현행위 등이기 때문에 수인하여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성명,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에 사용하는 등 성명, 초상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블로그에는 'C 소개', '눈성형 전+후 사진' 등 C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카테고리와 별지2 목록 '카테고리'란 기재 카테고리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별지2 목록 '카테고리'란 기재 카테고리는 C 성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외과를 홍보하는 카테고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블로그의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각 게시물들 중 일부의 제목에 C 성형외과의 명칭 및 C 성형외과가 행하는 시술명 등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게시물들의 게시자를 밝히는 정도로 보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게시물의 게시만으로 위 방문자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치료 등을 받은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이 사건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대중에 관한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별지2 목록 '순번'란 기재 1, 5, 7, 9 각 해당 게시물은 인터넷에 게재된 언론기사의 일부를 게시한 것으로서, 위 각 게시물에 사진 또는 이름이 사용된 원고들은 위 기사의 게재를 허용함으로써 자신을 홍보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위 기사의 내용이 게재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이고, 위 목록 '순번'란 기재 2, 3, 4, 6, 8 각 해당 게시물은 피고 또는 D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타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사진 및 게시물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이고, 위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 역시 그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각 사진 및 원고의 이름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것들로서, 위 각 게시물은 원고들의 초상권, 성명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촬영 및 공개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위 각 게시물의 게시가 원고들의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판사 김동원

판사 민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별지1

원고들 목록

(원고들 목록 삭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1-13

별지2

목록

순번	기사 카테고리	제목	사진이 게시된 원고
1	국내외star		
2	국내외star		
3	style매거진		
4	국내외star		
5	국내외star		
6	오늘의hot이슈		
7	style매거진		
8	국내외star		
9	국내외star		